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39	최은석의원	2024. 10. 28.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4.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94	이종욱의원 · 신영대의원	2025. 4. 1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 9. 29.)에서 위 2건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9. 30.)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3. 소수의견

한국수출입은행이 충분히 수익성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법률 제 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제20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으로,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을 “출자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집합투자기구에”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업무) ① (생 략)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신 설> 9.·10. (생 략) ③ ~ ⑦ (생 략)	제18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생 략)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출자할 ---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